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G1.31

법무부

법무부

G1.31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법무부

발간에 즈음하여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는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발전과 기본적 인권의 신장을 위해 헌법재판소 신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인권관련 법령개정, 법률구조와 범죄피해자구조 등 법률복지의 확충, 행정제도 개선, 시국관련사법 전원석방, 국제인권규약 가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질서가 완전히 자리잡기도 전에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옴으로써, 민주화 추진과정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련과 갈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토양 위에서만 꽂피울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집단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활동도 눈

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시민의식이 더욱 고양되어 법과 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풍토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의 불법행동은 날로 과격해졌고,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점점 커져 갔으며, 불법과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민주발전은 물론 국가존립의 기틀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로서는 이들 불법행동에 대하여 부득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아 사회안정을 이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또다시 많은

정치범, 양심수를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참뜻을 알리는 한편,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을 모아 그 실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발효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이 작은 책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데 밀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1990. 7.

법무부장관 이종남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 차례

발간에 즈음하여	5
I. 민주화와 법질서	15
1. 민주화 추진의 참뜻	15
2. 최근 수년간의 사회상	21
가. 불법집단행동의 빈발	21
나. 과격 노사분규의 확산	30
다.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전면 등장	36
3.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44
가. 법질서 확립의 공감대 형성	44
나. 정부의 대응	49
다. 인신구속의 신중	53
II.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운용되었나	63
1.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63
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63
나. 우리의 안보상황	68
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률이 있는가	73

2. 운용의 실상	75	3. 의문사	150
가. 제6공화국의 기본 입장	75	4. 소위 백색테러	162
나. 언론·출판	79	5.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165
다. 예술·창작	92	6. 변호인 접견권	171
3. 국가보안법과 통일문제	96	7. 인권시비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인권	175
가. 7·7 선언의 참뜻	96		
나.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	98		
다. 빗나간 통일론과 밀입북 사건	103		
4.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114	IV.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183
III. 인권시비의 시작과 끝	121	1. 인권신장 기반 구축	183
1. 정치범과 양심수	122	2. 무엇이 달라졌나	186
가. 정치범	122	가. 법령 정비	186
나. 양심수	129	나.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	193
2. 고문·가혹행위	140	다. 법률복지의 증진	195
가. 정부의 의지	141	라. 행정제도의 개선	196
나. 일부의 시비	145	마.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	201
		3. 내일을 향하여	204

I

민주화와 법질서

1. 민주화 추진의 침뜻
2. 최근 수년간의 사회상
3.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I. 민주화와 법질서

1. 민주화 추진의 참뜻

제6공화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향한 대망의 90년 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며, 아울러 21세기를 여는 민족사적 과제에 충실한 길이기도 하다.

구시대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우리가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지고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는 국민들의 욕구증대는 결국 제5공화국 후반기의 극렬한 민주화 투쟁으로 폭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때에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열화같은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마침내 6·29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6·29 선언은 이 나라 민주발전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6·29 선언을 통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개헌을 이루하였고, 실로 16년 만에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제6공화국을 탄생케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정부의 정통성 시비를 완전히 극복함은 물론 국민 총의에 따라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침해되지 않는 인권과 책임있는 자율이 확보될 때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도 다져지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 각자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가발전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제6공화국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민주화 의지는 먼저 정부에 의한 자율화·개방화 조치로 가시화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제도 및 정



6·29 선언을 통하여 16년 만에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치운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절차 등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적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아마 우리가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로 돌아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서로 다른 주의·주장이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며, 그 모든 욕구와 주의·주장이 다 수용될 수는 없다.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 다른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의 이해관계나 주의·주장과 상충되게 된다.

대립되는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와 주의·주장을 조절하고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귀속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곧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 법이라 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민주화 추진 또한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된 헌법과 법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진정한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같은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바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동은 당연히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민주화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일찍이 체험하지 못했던 혹심한 진통과 갈등을 겪었다. 오랜 억눌림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다양한 욕구,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화와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이 난무하는가 하면, 좌익폭력혁명세력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주화 조치를 악용, 공공연히 그 실체를 드러내 놓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과 질서가 자율적으로 준수·확립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는 인식하에,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시민의식이 더욱 고양되어 법과 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풍토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여 왔다. 일부 국민들로부터 약한 정부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아 가면서도 정부는 민주화 추진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무질서에 대하여 가급적 공권력 행사와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극성스러워지는 불법집단행동과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준동을 끝없이 방치할 수만은 없었다.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민주화 추진은 물론 국가 존립의 기틀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이같은 우려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를 저해하는 불법집단행동과 좌익폭력혁명 세력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한 국법질서 확립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6공화국은 국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부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작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주의·주장만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치주의와 국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하여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취급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는 인권이며, 진정한 법치주의는 인권의옹호와 신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물량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제6공화국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의 민주화는 법과 질서가 엄정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최근 수년간의 사회상

가. 불법집단행동의 빈발

6·29 선언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는 각계

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지난날 권위주의에 억눌려 왔던 소외계층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가려졌던 근로자들의 권익회복 주장 등 각계 각층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제6공화국의 민주화 의지와 깊은 연관 있다고 하겠다. 제6공화국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자율화·개방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기坦없이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으로서,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익숙치 못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불만과 욕구는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즉,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서라

도 오로지 자신의 주의·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몫만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으로 불법집단행동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 일부의 무분별한 폭력적 의사표시는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이같은 폭력적 행위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음은 물론 생산활동의 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국민 생활에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와 같은 불법집단행동은 어느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과격시위와 폭력행위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 이전의 학원가 시위에서는 정통성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6공화국의 출범으로 이 문제는 저절로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이슈로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여전히 제6공화국을 군

부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면서 소위 양대부정선거 규탄, 5공비리 척결,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남북학생회담 개최, 서울올림픽개최 반대, 이철규군 변사사건 진상규명, 평양축전참가 등 그때그때 각종 이슈를 내걸고 불법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하는 운동권의 핵심 학생들도 외형상으로는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의 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론, 폭력혁명론, 나아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미제와 그 대리정권인 군사파쇼정권이 매판독점자본가와 결탁하여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위 민중을 착취·수탈하고 있다는 도식적인 분석하에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폭력으로 타도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선량한 학생들은 이같은 운동권의 노선을 외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위 학내 민주화를 내세워 학생들을 결집시키려 들었고 더욱 격렬한 방법으

로 투쟁방향을 전환하였다.

운동권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 등 학사행정 참여를 주장하는가 하면 등록금 동결, 무능·어용교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폭력행사도 불사하였다. 이같은 극렬행위는 언제나 소수 과격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같은 소요로 대학 총장실이 학생들의 농성장으로 변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하였다. 그 결과 총장이 집무실을 버리고 다른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학사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도 빈발하였다.

어떤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간부들이 농촌봉사 활동비를 요구하며 총장실에 난입, 사무실 집기를 들어내고 이를 만류하는 교수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대학생들은 교수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삭발을 하는 등 반인륜적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장기간 수업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이성을 잊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 학내문제를 이슈로 표방하면서도 화염병, 돌,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화염병과 돌 등을 던져 경찰은 물론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또한 그들은 검찰청사, 경찰관서, 정당당사는 물론 외국대사관, 외국인주택 등을 화염병과 사제폭탄으로 습격하고 그 안에 들어가 점거·농성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사건과 그해 10월 14일 연세대 설인종군 폭행치사 사건으로 치달았다. 즉 일부 과격학생들은 부산 동의대에서 시위 도중 불을 질러 경찰관 17명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였고, 연세대에서는 전문대생 설인종군을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다.

소수 대학생들이 이처럼 극렬행동을 일삼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하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들은 교원의 임의적 단체결성이나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실정법을 무시한 채 교단을 떠나 집회와 시위현장을 전전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참교육 운동을 내세워 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급



여의도 농민시위는 농민들이 죽봉, 몽둥이 등을 미리 준비해 시위에 참여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진적 사회변혁이론까지 주입시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일부 농민들도 이같은 사회분위기에 편승,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코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가 군수를 끊어 앉히고 폭행을 가하면서 고추를 전량 수매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농민이 원하는 만큼 수해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청사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특히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시위는 불법집단행동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이날, 여의도 광장에 모인 1만 여 농민들은 수세 폐지와 고추 전량수매를 요구하다가 죽창, 죽봉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는 한편 부근의 건물과 차량에 방화하였다.

이러한 과격시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 및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정부가 이주대책을 비롯한 제반 정책을 사전에 강구해 주었음에도 시위에 가담한 일부 세력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면서 불법행동을 서슴치 않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법집회 및 시위는 1988년도에 6,921회, 1989년도에 7,056회 발생하였다. 그중 3,242회의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투척을 비롯한 각종 폭력이 동원되었다.

더욱이 폭력이 행사된 시위에서는 평균 5명 정도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가 얼마나 과격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아래 거의 매일 1회 정도 공공기관 습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1989년 한 해에만 총 335건에 4만 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그 동안에 발생한

표 1 불법집회·시위현황

구분 연도	불법집회·시위		화염병 등 폭력행사		피해규모 경찰관피해 물적피해
	참가회수, 단위: 회	참가인원, 단위: 명	경찰관피해	물적피해	
1986	2,201	691	3,274명	차량 47대, 시설피습 89, 기타장비	
	475,692	193,421			
1987	12,957	2,173	9,950명	차량 165대, 시설피습 489, 기타장비 8,849	
	3,145,667	1,021,581			
1988	6,921	1,708	6,701명	차량 35대, 시설피습 414, 기타장비 3,746	
	1,789,967	679,180			
1989	7,056	1,534	8,900명	차량 20대, 시설피습 335, 기타장비 2,677	
	1,984,987	581,018			

치안본부 통계 자료

표 2 공공기관 기습점거·방화현황

구분 연도	합계	정부기관		외국기관		기타
		참가회수, 단위: 회	참가인원, 단위: 명	정당	외국기관	
1986	89	62	14	9	4	
	9,230	4,222	1,825	1,895	1,288	
1987	489	386	67	3	33	
	49,335	22,458	18,520	105	8,252	
1988	414	280	81	27	26	
	42,449	17,505	10,452	8,250	6,242	
1989	335	186	60	13	76	
	40,398	12,149	9,342	8,952	9,955	
계	1,327	914	222	52	139	
	141,412	56,334	40,139	19,202	25,737	

치안본부 통계 자료

불법집단행동의 양상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989년 3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었다. 그런데도 대학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 화염병과 돌이 난무하고 불법폭력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나. 과격 노사분규의 확산

정부의 민주화·자율화·개방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가려져 있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6·29 선언 이후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 1988년에는 1,873건, 1989년에는 1,616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1987년의 3,749건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분규는 쟁의의 방법이 과격해지고, 그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노사분규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현장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기존 노조와 소위 민주노조간의 노·노갈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특히 노사분규를 노사간의 계급투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좌익 폭력혁명세력의 배후조종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사분규의 현장에 해고근로자, 노동상담소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분규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일부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리는 목적은 임금, 후생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려 하고, 사용자에게는 권한이 전혀 없는 구속자 석방문제를 트집삼아 극단적인 노사대립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불법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경우, 이에 물리적으로 대항하면서 전국적 파업 획책 등 정치적 연대투쟁으로 몰아갔다.

이같은 사태는 겉으로는 노동쟁의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변혁하려는 불순책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고율의 임금인상 등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직 사원을 구타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방화, 파괴, 도로와 철도의 점거 등 각종 과격노사분규가 급증하였다.

지난 1988년의 경우 대우조선, 삼성조선, 대우중공업 분규사건과 서울지하철 근로자 파업사건, 전국 철도기관사 파업사건, 연합철강 분규사건 등 대형 노사분규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규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때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분규가 장기화됨으로써 일부 사업장의 생산시설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3조 2,020억원의 생산차질과 7억 3,200만불의 수출차질이 생기는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었는데, 1989년에 들어 와서 노사분규의 과격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1989년 3월 초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파업 근로자들이 조업 근로자들을 무차별 폭행, 다수 근로자들을 부상케



1989년에 들어와서도 노사분규의 과격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하고, 회사 이사 등을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직후인 4월 7일 인천 수성산업운반기계에서는 과격 노조원들이 농성에 가담치 않은 노조원을 3시간 동안이나 나무에 묶어 놓고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6월 초순 울산 영남화학에서는 노조원 200여명이 구덩이 4개를 파고 판을 준비한 다음 회사 전무 등에게 그 안에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한편, 임원들을 사무실에 감금하여 옷을 찢고 오물을 펴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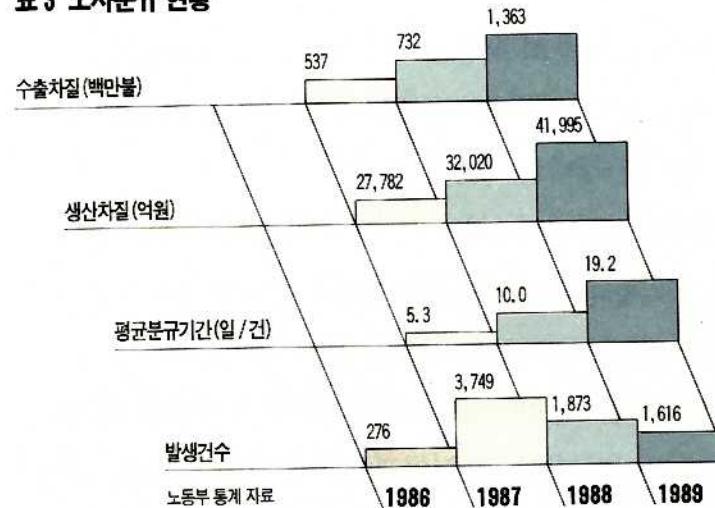
또한 6월 23일 부산 만호제강에서는 노조원 100여명이 노사 협상 중인 회의장을 점거, 회사측 대표들의 옷에 신나를 뿌린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요구사항 수락을 강요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9월 4일 인천 경동산업(주)에서는 정상조업 방해사실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데 불만을 품은 일단의 근로자들이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 그들은 신나, 액체 왁스, 화염병, 과도, 쇠파이프, 각목, 철제 육각봉 등으로 회사 간부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신나를 뒤집어 쓴 근로자 2명이 회사 노무담당 관리이사 강모씨에게도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여 3명이 함께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풍산금속 안강공장과 (주)통일 등 방위산업체,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등 기간산업체와 서울지하철 등 공익사업 분야에서의 파업, 마산·창원지역, 인천·부천지역 및 수원·성남지역 등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노사분규는 급기야 국가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같은 노사분규는 평균 분규기간이 1987년에 5.3일,

표 3 노사분규 현황



1988년에는 10.0일이었다. 그러나 1989년에는 19.2일로 2배 가까이 장기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4조 1,995억 원의 생산차질과 13억 6,300만 불의 수출차질을 가져왔다.

그동안 순조롭게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는 1987년 이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노사분규도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갑자기 휘몰아친 노사분규는 우리 경제를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 넣었다. 우리 경제는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생산 및 수출의 차질, 대외 경쟁력 감소, 외국 바이어들의 수입

선 전환,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업가의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투자의 둔화 등을 초래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물가·실업률이 고개를 치켜드는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던 것이다.

다.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전면 등장

제6공화국의 민주화 추진과 관련,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전면 등장이다. 그들은 그동안 지하에서 암약하거나 특정분야에서 민주화 투쟁세력으로 위장하여 활동해 오다가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계기로 마침내 자신들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그들은 현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표방하면서 학원가는 물론 종교계·출판계·노동계 등 각 분야에 침투하여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체제전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국민들의 대공 경각심과 반국가사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해 잠복해 있다가 이와 같이 사회의 전면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1986년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인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따른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는 세력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핵심분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봉자들로서 소위 주사파라 불리우고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한편 군사파쇼정권이 매판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을 지배·수탈하고 있으므로 미제와 군사파쇼정권을 폭력으로 타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또 계급폭력혁명론에 따라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여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나왔다.

그들은 공산주의이론의 허구성과 세습통치체제를 구축하려는 북한 전체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는 일체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현실만을 일방적으로 비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인민대

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를 합리화 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곧 공산주의 혁명가의 기본 품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헌법(제4조)에서 까지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면서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 동포를 당과 김일성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한편, 북한을 이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주체사상이야말로 가장 시대착오적인 사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주체사상에 도취되어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하에 그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대남적화를 선동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왜곡 비방하는 북한 방송을 그대로 수록한 책자 또는 유인물을 전국에 배포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6·25 전쟁을 북침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김일성 선집’을 ‘장군님의 노작’으로 치켜 세우는가 하면, 북한에 의한 칼(KAL)기 폭파사건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이라고 우기면서 ‘칼기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란 유인물까지 배포하였다. 칼기 폭파사건은 1990년 3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북한의 테러행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위 의식화 학습을 통해 좌익폭력혁명사상을 전파하였다. 특히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식화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뒤엎은 다음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조직 강령과 규약, 생활수칙까지 제정하는 등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중민주혁명론(PDR)이 재등장하였다. 그들은 이제까지 운동권의 핵심을 이루어 나온 소위 주사파에 반대하면서, 주체사상이 아니라 교조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주사파에 맞서 공공연히 대학 가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좌익폭력혁명세력들은 공권력을 제도화된 폭력으로 단정, 이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사제폭탄을



소수 극렬세력이 주도하는 대학가 시위에서는 화염병 투척이 일상화되고, 최근에는 사제폭탄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용하고 공공기관을 습격하는 행위야말로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도 돌이나 각목에서 화염병으로, 다시 사제폭탄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들은 반미를 외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 미문화원, 외국인 주택을 습격하거나 점거·농성하고, 학교교문 앞 같은 곳에 성조기를 그려 놓아 그곳을 내왕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으로 하여금 밟고 다니게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을 군사파쇼의 폭압기구로 몰아 세우고 국내 유수의 재벌그룹이나 외국과의 합작회사 등을 매판자본으로 매도하면서 습격 또는 점거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좌익폭력혁명세력은 일부 종교계에도 침투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종교단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또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기관지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폭력혁명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그뿐 아니라 일부 출판업자들은 폭력혁명과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북한원전을 그대로 복제, 대학가 서점 등지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좌익폭력혁명세력을 한층 자극하였다.

특히 1989년에는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소위 주사파 등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유인물이 부쩍 늘어났다. 경찰에서 수거한 유인물만 하더라도 1988년에는 2,554건이었으나 1989년에 들어와 4,120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1970년 후반기부터 근로자로 위장, 사업장에 침투하여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계급혁명의식을 은밀하게 확산

시켜 오던 좌익세력의 활동도 최근 현저하게 증가되면서 공개적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사관계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립·투쟁관계로 파악하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야 노동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혁명의식을 불어넣고 불법파업을 선동하였다. 그들은 또 울산, 마산, 창원, 인천, 부천 등 대규모 공업단지에 침투하여 동시연대파업을 획책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노사분규가 인명살상, 시설물파괴, 방화 등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그들의 배후 조종과 사주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이같은 책동은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각계각층으로 침투, 선전 및 선동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최후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전술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1989년에는 밀입북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에 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일부 학생들과 소위 재야인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부 당국과 사전협의를



1989년 3월 25일 밀입북한 문익환씨가 김일성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하지 않거나 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북한측과 접촉을 기도함으로써 큰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무분별한 대북접촉 기도는 1989년 3월 25일 문익환씨가 밀입북한 것을 시작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서경원씨 밀입북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더해 주었다.

특히 서씨의 경우 북한측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간첩활동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대생 임수경양 밀입북 사건과 천주교

신부 문규현씨의 밀입북사건이 발생하였다. 임양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다는 명목이었고, 문씨는 임양과 합류하기 위하여 밀입북하였다. 그들은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고 외쳐대는 등 우리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해방 후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때 북한공산집단은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선전극에 김구 선생을 철저히 이용하기만 하였을 뿐 진정한 통일정부 수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후 그들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동족을 살상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대남적화야욕은 아직도 변치 않고 있다.

자외적 밀입북은 그들의 전략·전술에 따라 이용당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3.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가. 법질서 확립의 공감대 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6공화국 출범 초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노출된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공권력 행사와 사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나왔다.

특히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사분규에 있어서도 개방과 자율의 전환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노사간의 합리적 분규타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과 과격노사분규는 날이 갈수록 험악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좌익폭력혁명세력까지 가세하여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절도와 강도, 가정파괴사범과 인신매매범, 조직폭력배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마약·히로뽕 따위가 확산되는 등 민생치안질서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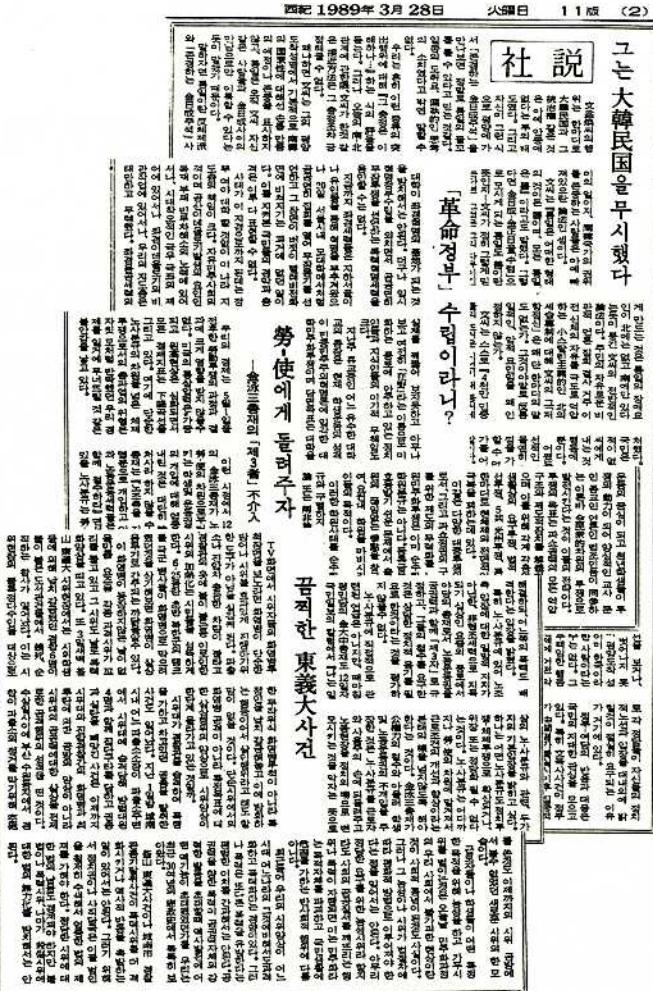
지 극도로 문란해짐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심화되었다.

결국 민주화와 자유화를 과도하게 주장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인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이런 혼란에 편승한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준동은 마침내 국가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에 더 이상 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한편 온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 사이에 국법질서 확립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불법집단행동과 과격노사분규, 좌익폭력혁명세력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89년 3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문익환씨 밀입북 사건과 관련, ‘우리는 편집적이고 독선적인 한 개인의 행동에 의해 돌연히 우통당하고 뒤흔들린 느낌을 가지며 심한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어떻



언론에서도 불법집단행동, 과격노사분규, 좌익폭력혁명세력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게 봤길래 그랬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은 정말 있는가 없는가'라고 개탄하였다.

조선일보는 또 1989년 4월 13일자 사설에서 '어떤 노사 분규도 정치투쟁, 체제투쟁으로 확산되거나 위장 또는 정당화될 수 없다. 노사분규는 어디까지나 노사의 차원에 맡겨져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이라는 본래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좌익폭력세력화하는 대학가 운동권과 관련, 1989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대학이 좌경혁명의 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임시혁명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공공연히 무장투쟁을 선언하는 폭력 세력을 용인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좌경세력들은 지하 써클이나 유인물을 통해 혁명을 부추겨 왔으나, 20일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처럼 공공연히 집회를 열어 무장봉기를 선언하고, 그 장면이 버젓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기는 과거에 없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경악과 충격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동아일보는 또 1989년 5월 3일자 사설에서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위한 시위라 할지라도 사회의 공공질서를 깨뜨

리는 행위나 폭력이 자행되면 이는 민주화라는 목적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제, 폭력시위의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반향은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병폐적 현상과 관련,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나. 정부의 대응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법률은 그 제정에서는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국민 총의에 바탕을 두어야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도 무절제한 자유에 의한 불법과 무질서가 민주화의 표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법의식 내지 질서의식은 최대한 존중되어 마땅하다. 만일 이같은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은 또 다른 형태의 법경시 풍조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좌익폭력혁명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1989년 초 민생치안합동수사본부와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특히 공안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좌익폭력혁명세력에 대응, 관계 수사기관의 총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검찰의 지휘체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 상호 간의 공조협력체제를 한층 튼튼히 함으로써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키 위해 발족되었다. 이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989년 4월 3일에 발족되었다가 6월 19일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기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수사요원들은 한결같이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 검찰의 지휘 아래 혁신적이고도 일사불란한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부는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였으나, 이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총력 대응으로 좌익폭력 혁명세력의 활동이 대폭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가 권위와 실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국법질

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공안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찰 주도 아래 사법별로 합동수사반을 편성,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소위 주사파 척결, 노동계에 침투한 좌익세력 척결 등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획수사를 전개함으로써 좌익폭력혁명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법질서 파괴행위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정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금지토록 통고하였다.

만일 이같은 통고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집회 및 시위를 감행할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이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폭력적 집단행동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주최·주관자나 화염병 투척자 등 극렬행위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구속 조치하였다.

또 노사분규의 경우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폭력적 분규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특히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동료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폭행·감금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파괴하는 등 인명을 살상하고 방화를 서슴치 않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악성 노사분규 주동자를 가려내어 과감히 구속하였다.

정부는 계급적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철퇴를 가하였다. 그들은 소위 '노동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사업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특히 신분을 위장하여 취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사분규를 배후 조종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정부는 이른바 위장취업자, 노학연계투쟁 주동자, 그리고 노사관계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외부의 불순세력을 격리하고자 최선의 노

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 불순세력은 정치투쟁적 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선동하는 세력으로서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당연히 배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좌익폭력혁명세력의 경우 정부는 이른바 주사파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소위 주사파는 우리 사회를 사상적으로 오염시키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우리가 다같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 주체사상에 빠져 이른바 공산혁명을 꿈꾸는 일부 세력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학원가·노동계·출판계·종교계 등에 침투하여 반국가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한 당국과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미명하에 밀입북하거나 자의적으로 대북접촉을 기도하여 국가통치주권을 침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차원에서 단호히 사법조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계급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출판물, 좌익이념단체와 의식화 교육장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폈다. 이는 정부가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사상전술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

다. 인신구속의 신중

인신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신구속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할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공화국은 이 점을 중시하여 인신구속의 신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에 문제점들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대량 구속과 대량 석방이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경시 풍조를 만연케 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6공화국은 지난날의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가령 폭력적인 불법시위나 과격노사분규가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정부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다. 즉, 이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 지휘하에 관련자들을 개별 심사한 후 그 주동자나 극렬행위자만 엄격히 선별 구속하는 등 정부는 지난날과 같은 대량 구속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구현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소위 시국사범 문제와 관련, 1일 평균 구속자 수가 제5공화국 때보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대폭 증가하였다거나 1988년도 보다 1989년도의 구속자 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소위 시국사범이라면 구시대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정부비판적 주장을 하다가 실정법위반으로 구금되거나 처



정부는 1988년 12월 21일자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으로 소위 시국사범에 관한 논쟁을 매듭지었다

벌받은 자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사범들은 수차례에 걸쳐 석방, 사면·복권되었고, 특히 1988년 12월 21일 국민대화합을 이루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전원 석방, 사면·복권되었다.

이제 제6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시국사범이라는 용어가 통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6공화국 하에서는 민주적 대개혁이 단행되고 국회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활성화되

어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한 엄정한 검토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른바 시국사범이 존재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용어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혹자는 정치범과 양심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기도 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구속자 수의 증감은 사회상황 및 범죄현상의 변화와 국민의 법질서 의식 및 그것에 바탕을 둔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6·29 선언 이후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폭력시위와 과격 노사분규 등 불법집단행동이 얼마나 난무하였고 좌익폭력 혁명세력이 얼마나 극심하게 준동하였는가는 이미 최근 수년간의 사회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5공화국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집단행동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빈발하지도 않았고 그 양상이 최근처럼 과격하거나 극렬하지도 않았다.

시위현장이나 노사분규현장에서 인명을 살상하고 방화하거나 공공건물과 사람에게 직접 화염병을 투척하고 학

교와 생산현장의 기물 시설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 파괴행위는 실정법위반 이전에 명백한 자연법위반이다.

또한 과거에는 급진좌경세력이 수사당국의 눈길을 피하여 정부비판적 집단행동의 배후에 잠재하여 있었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주사파니 마르크스·레닌주의파니 하면서 공공연히 학원가·노동계·출판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좌익폭력혁명을 부르짖고 각종 파괴활동을 배후조종·선동하여 반국가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자유민주국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민주주의를 그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폭력이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좌익폭력혁명세력에 대해서까지 이유없는 관용을 베풀면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운위하는 사람들이 거론하는 구속자 대부분은 바로 자연법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폭력적인 범법자들이 아니면 좌익폭력혁명을 스스로 추구하거나 그러한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수치만을 들어 우리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하게 불법집단행동과 과격노사분규, 그리고 좌익폭력혁명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속자의 수와 관련하여 인권상황을 운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같은 사회여론도 깊이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민주발전을 이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하거나, 우리의 사회상황과 범죄양상의 변화를 도외시한 채 인권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운용되었나

1.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2. 운용의 실상
3. 국가보안법과 통일문제
4.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Ⅲ.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운용되었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제6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운용과 관련, 이 법이 정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일의 걸림돌로 간주,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1.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우리는 광복 이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투쟁을 겪었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 속에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그러나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은 정부수립 이후에

도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와해시키고자 집요한 도발과 파괴적 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좌익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발의에 따라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형법이 1953년 9월 18일에야 제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6·25 전쟁 등 정부수립 전후의 혼란기를 틈탄 공산주의자들의 국가변란기도를 제압하고 정치적 변혁기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코자 획책한 북한공산집단 및 그 동조세력들을 척결해 나온 제도적 장치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임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는 등 우리 민족에게 임청난 비극을 안겨주었다

의로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정부참칭)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국가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하는 북한공산집단 등

“반국가단체”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은 북한공산집단을 위하여 살인·방화하거나 간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거나 국내에 잠입하는 행위, 그들로부터 공작금을 받거나 그들의 공작원에게 총포·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 적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반국가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그들의 대남전략·전술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부로 회합·통신·연락하는 행위, 나아가 반국가사범인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침해사범을 규제하기 위해 형법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보안법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우리 형법 또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적국”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우리의 동족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

키려 한 장본인이다. 지금도 그들의 남침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적국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침범자이며 체제전복 위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체계상 북한공산집단을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으로 특수한 취급을 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과의 교전을 상정한 것으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국이 아니므로 그들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하여 형법상의 외환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침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북한공산집단 및 그 추종세력들의 간접침략활동은 규제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의 이러한 빈틈을 메워주는 특별형사법이다.

나. 우리의 안보상황

최근 국제정세는 동·서간의 냉전구조가 서서히 허물어 지면서 개방과 민주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개혁과 개방, 폴란드·헝가리 등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변화, 특히 독일의 베를린 장벽붕괴와 통일추진과정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주체사상과 대남공산혁명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당규약 전문은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공산정권의 제일 목표



1990년 3월 3일 휴전선 부근에서 또 발견된 제4땅굴만 보더라도 북한의 평화통일론이 허구에 차 있음을 입증한 결과가 되었다

는 여전히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는 데 있으며, 그들의 기본전략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 군사력의 대부분이 최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휴전선 부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땅굴만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북한은 최근 이같은 기본전략에 입각하여 사상전 내지 심리전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의 개